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62
----------	-------

발의연월일 : 2018. 9. 27.

발의자 : 송희경 · 신보라 · 김수민
김현아 · 신상진 · 원유철
임이자 · 김석기 · 정갑윤
김재경 · 함진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다 보니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

드시 포함하도록 하고民間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
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
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을 “1명, 부위원장 1명을”로, “20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여성가족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위원은”을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차관”을 “장”으로, “차관급”을 “장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이”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청소년
제10조제5항 중 “제4항제15호”를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위원회의 선발 기준·절차 등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운영 등”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15호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제1

0조제4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보
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여성가족부</u>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u>1명</u>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p> <p>④ 위원장은 <u>여성가족부장관</u>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획재정부차관</u> 2. <u>교육부차관</u> 3.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u> 4. <u>통일부차관</u> 5. <u>법무부차관</u> 6. <u>행정안전부차관</u> 7. <u>문화체육관광부차관</u> 	<p>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 -----<u>국무총리</u> <u>소속으로</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1명, 부위원장 1명을</u>-----<u>30명</u>----- -----<u>. 이 경우</u> <u>제15호 및 제16호에</u>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u>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p> <p>④ -----<u>국무총리가</u> -----<u>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u> 이 되며, 위원은----- -----<u>. <후단 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획재정부차관</u> 2. <u>교육부장관</u> 3. <u>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장관</u> 4. <u>통일부장관</u> 5. <u>법무부장관</u> 6. <u>행정안전부장관</u> 7.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p>8. <u>산업통상자원부차관</u> 9. <u>보건복지부차관</u> 10. <u>고용노동부차관</u> 11. <u>중소벤처기업부차관</u> 12. <u>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u> 13. (생 략)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신 설></p>	<p>8.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9. <u>보건복지부장관</u> 10. <u>고용노동부장관</u> 11.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12. <u>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u> 13. (현행과 같음) 14. ----- -----장 -----장관급----- 15. ----- ----- --<u>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국무총리가</u> ----- 16. <u>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u>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청소년</p>
<p>⑤ 제4항제1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청소년정책위원회</u>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u>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위원회의 선발</u> -----기준·절차 등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p>